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안내

(2020.1.1. 시행, 분류체계 개편 중심으로)

---



질병관리본부

# 목 차

---

1. 감염병 분류체계 경과
2. 감염병 예방법 개정내용

# 전염병예방법

[시행 1957.2.28.][법률 제308호, 1954.2.2.제정]

제1종전염병(13종)	제2종전염병(4종)	제3종전염병(3종)
콜레라 페스트 발진지브스 발진열 장지브스 파라지브스 천연두 성홍열 디프테리아 적리(세균성, 아메바성) 재귀열 유행성뇌척수막염 유행성뇌염	급성전각회백수염 백일해 마진 유행성이하선염	결핵 성병 라병

# 전염병예방법

[시행 2000.8.1.][법률 제6162호, 2000.1.12.일부개정]

## 제1군전염병 (5)

물·식품매개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제2군전염병 (9)

국가예방접종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 제3군전염병 (17)

유행 감시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열  
발진티푸스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

## 제4군전염병 (12)

발생·유입 감시

황열  
뎅기열  
마버그열  
라싸열  
리슈마니아증  
바베시아증  
아프리카수면병  
크립토스포리디움증  
주혈흡충증  
요우스  
핀타  
신종전염병증후군(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

## 지정전염병 (8)

유행여부 조사·감시

A형간염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VRSA) 감염증  
샤가스병  
광동주혈선충증  
유극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출증

# 2000년 법 개정이유

- 전염병의 위급성 정도나 의학적 체계에 따라 재분류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전염병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제1군: 전염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전염병
  - 제2군: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전염병
  - 제3군: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 수립이 필요한 전염병
  - 제4군: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으로서 방역대책의 긴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
  - 지정감염병: 제1군~제4군 전염병외에 유행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

# 현행 감염병 분류체계 및 감염병 종류

제1군감염병 (6)	제2군감염병 (12)	제3군감염병 (22)	제4군감염병 (20)	제5군감염병 (6)	지정감염병 (14)
물·식품매개	국가예방접종	유행 감시	발생·유입 감시	기생충감염증	유행여부 조사·감시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열 발진티푸스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 매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C형간염 VRSA 감염증 CRE 감염증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야토병 큐열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아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곤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전수감시: 59종  
(즉시 신고)**

**표본감시: 21종  
(7일 이내 신고)**

## • 장관감염증(20)

-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 감염증(ETEC), 장침습성대장균 감염증(EIEC), 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EPEC),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 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 사이토제네스 감염증, 그룹 A형로타 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 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 • 급성호흡기감염증(9)

-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보카 바이러스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감염증,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클라미디아 폐렴균 감염증

##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11)

-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스열원충증, 아프리카수면병, 주혈흡충증, 샤가스병, 광동주혈선충증, 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독소포자충증, 메디나충증

# 기타 목적을 위한 지정감염병(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9)	생물테러 감염병 (8)	성매개감염병 (7)	인수공통감염병 (10)	의료관련감염병 (6)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하 는 감염병(22)	강제처분 감염병(8)	긴급 예방관 리가 필요한 감염병(1)
두창 폴리오 신종인플루엔자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콜레라 페렴형 페스트 항열 바이러스성출혈열 웨스트나일열	탄저 보툴리눔 독소 증 페스트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두창 야토병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침규톤딜롬 사람유두종바이 러스감염증 (HPV)	장출혈성대상균감 염증 일본뇌염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동물인플루엔자 인 체감염증 중증급성호흡기증 후군(SARS) 변종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 큐열 결핵	반코마이신내성황색 포도알균(VRSA)감 염증 반코마이신내성장알 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 도알균(MRSA)감염 증 다제내성녹농균 (MRPA)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 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 균속균종(CRE) 감염 증	제1군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상균감염증 A형간염 제2군 디프테리아 홍역 폴리오 제3군 결핵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탄저 제4군 페스트 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 보툴리눔 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 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신종감염병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페스트 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 보툴리눔 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신종감염병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 군(MERS)  제1군 전체 제2군 디프테리아 홍역 폴리오 제3군 결핵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법령에 명시된 감 염병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2020년 법 개정이유

- (기존)질환 특성에 따른 '군(群)'별 분류체계
- ➔ 감염병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신고시기 등을 고려한 '급(級)'별 분류체계
- (현행) 5군+지정 총 80종 → (개정) 4급 총 86종\*
- \* 바이러스성 출혈열(1종)을 개별 감염병(마버그열, 라싸열 등 6종)으로 분리·열거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추가, 매독을 4급 표본감시 대상으로 변경

# 개정 감염병 분류체계

구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특성	생물테러감염병을 포함하여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17종)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0종)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26종)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23종)
감시방법	전수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
신고	즉시	24시간 이내		7일 이내
보고	즉시	24시간 이내		7일 이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 1] [법률 제15534호, 2018. 3. 27, 일부개정]

1급 (17종)	2급 (20종)	3급 (26종)	4급 (23종)
생물테러감염병을 포함하여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가.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마. 남아메리카 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가. 결핵 나. 수두 다. 홍역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 카. 유행성이하선염 타. 풍진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군종(CRE) 감염증	가. 파상풍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 차. 쯤쯤가무시증 카. 렘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 하. 신증후군출혈열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가. 인플루엔자 나. 매독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첨규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 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기생충 감염병 (9)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9)	생물테러 감염병 (8)	성매개감염병 (7)	인수공통감염병 (10)	의료관련감염병 (6)	감염병관리기관에 서 입원치료를 받 아야하는 감염병 (11)	강제처분 감염병 (0)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해외유입기 생충감염증	두창 폴리오 신종인플루엔자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콜레라 페렴형 페스트 황열 바이러스성출혈열 웨스트나일열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페스트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두창 야토병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침규톤딜롬 사람유두종바이 러스감염증 (HPV)	장출혈성대상균 감염증 일본뇌염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변종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 큐열 결핵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 도알균(VRSA)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장알 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 알균(MRSA)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 (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 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 속균종(CRE) 감염증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상균 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감염증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제1급(법 제41조)	(법 제42조) 제1급 제2급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상균 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세계보건기구감 시대상감염병

# 감염병 신고 의무자

## ➤ 전수감시 감염병

현행	개정안	비고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의사, <b>치과의사</b> 또는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군의원, 소속 부대장	<좌동>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직원,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좌동>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b>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b>
그 밖의 신고의무자*	<좌동>	비의료인

- \* 대상감염병: 홍역, 결핵,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 일반가정 세대주(세대원), 학교·공연장·운송수단·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대표자)
- \*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자

## ➤ 표본감시 감염병 : 지정의료기관의 장

# 감염병 신고 방법

➤ **팩스**를 통해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신고

➤ **정보시스템**으로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

- 다만, 제1급감염병일 경우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등의 방법으로 즉시 신고한 후 지체없이 정보시스템(보건소장에게 팩스 제출 가능)으로 신고서 제출  
(시행규칙 개정안)

## ※ 정보시스템 신고 경과

- 2000년 EDI 방식으로 개인단위 발생신고 최초 도입
- 2007년 웹 신고로 전환
- 2015년 이후 단계적 EMR 및 질본 전산시스템 연계  
(감염병 자동신고 지원시스템)

# 신고기간 및 대상

## ➤ 급별 신고 기간 세분화·명확화

현행		
구분	신고기간	신고대상
1군~4군	지체없이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5군 및 지정감염병	7일 이내	환자 발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지체없이	이상반응자

개정안		
구분	신고기간	신고대상
1급	즉시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2~3급	24시간 이내	
4급	7일 이내	환자 발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즉시	이상반응자

# 보고기간 및 대상

## ➤ 보건소장 등의 보고 (시행규칙 개정안)

현행		
구분	보고기간	보고대상
1군~4군	지체없이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5군 및 지정감염병	매주 1회	발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지체없이	이상반응자

개정안		
구분	보고기간	보고대상
1급	즉시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2~3급	24시간 이내	
4급	7일 이내	발생, <b>사망</b>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즉시	이상반응자

#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 ▶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시행규칙 개정안)

- 대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환자
- 제한 범위: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음

구분	현행	개정안
대상감염병	제1군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제한 기간	<b>증상 및 감염력</b> 이 소멸되는 날까지	<b>감염력</b> 이 소멸되는 날까지
제한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li> <li>- 식품접객업(식품위생법 제36제1항제3호)</li> </ul>	<좌동>

# 신고의무자 벌칙 규정

구분	현행	개정안
대상	감염병환자등의 발생(사망)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	<좌동>
벌칙	1~4군: 벌금 200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급: <b>벌금 500만원 이하</b></li> <li>- 3~4급: <b>벌금 300만원 이하</b></li> </ul> <p>* 그 밖의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경우: <b>벌금 200만원 이하</b></p>



## 인플루엔자 신고서

수 신 : 질병관리본부장

① 표본감시기간 : 주(   년   월   일 ~   년   월   일)

② 구분	0세	1~6세	7~12세	13~18세	19~49세	50~64세	65세 이상
③ 총진료환자수	명	명	명	명	명	명	명
④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신고일 :           년           월           일

표본감시기관명 :

표본감시기관장:

요양기관지정번호 :

⑤ 연락처 :

**※작성요령:**

- ① 표본감시기간은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단, 12월에서 익년 4월까지의 일일 보고입니다)
- ② 연령은 만나이 기준입니다.
- ③ 표본감시기간 내 진료한 총 환자 수를 작성합니다.
- ④ 표본감시기간 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를 작성합니다.
- ⑤ 연락처는 신고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 급성호흡기감염증 신고서

수 신: 질병관리본부장

① 표본감시기간: 주( 년 월 일 ~ 년 월 일)

종 류		구분	예	1-6세	7-12세	13-18세	19-49세	50-64세	65세이상
세균 (2종)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③ 총 환자 수							
		④ 외래환자 수							
	클라미디아 폐렴균 감염증	총 환자 수							
		외래환자 수							
바이러스 (8종)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총 환자 수							
		외래환자 수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총 환자 수							
		외래환자 수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총 환자 수							
		외래환자 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총 환자 수							
		외래환자 수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총 환자 수							
		외래환자 수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총 환자 수							
		외래환자 수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총 환자 수							
		외래환자 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총 환자 수							
		외래환자 수							
	⑤ 사망환자 수								
사망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망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확진일	사망일			

신고일: 년 월 일  
 표본감시기관장: \_\_\_\_\_  
 요양기관지정번호: \_\_\_\_\_  
 주 소: \_\_\_\_\_ ⑥ 연락처: ( - - )

※작성요령:  
 ① 표본감시기간은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② 연령은 만나이 기준입니다.  
 ③, ④ 표본감시기간 내 감염병별 총 환자 수 및 외래환자 수를 연령별로 작성합니다.  
 ⑤ 표본감시기간 내 사망 환자 중 (1)외래(응급실 포함)의 경우 최근 30일 이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력이 있는 환자 수와 (2)연속된 입원기간 동안 인플루엔자 확진을 1번이라도 받은 환자 수의 합을 연령별로 작성합니다.  
 ⑥ 연락처는 신고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또는 의료기관내 전산시스템과 연계된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할 경우 신고해야 할 항목이 자동으로 입력됨

###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 신고서

수 신: 보건소장

표본감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환자 성명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연령	만 세
환자 거주지	도(시) 구·군			
발병일	년 월 일	진단일	년 월 일	
외래/입원구분	<input type="checkbox"/> 입원 <input type="checkbox"/> 외래	입원일	년 월 일	
주요진단	<input type="checkbox"/> 무균성뇌막염 <input type="checkbox"/> 뇌염 <input type="checkbox"/> 폴리오양마비 <input type="checkbox"/> 심근염 <input type="checkbox"/> 심낭염 <input type="checkbox"/> 확장성심근병증 <input type="checkbox"/> 신생아폐혈증 <input type="checkbox"/> 기타 합병증 _____			
주요증상	<input type="checkbox"/> 발열 <input type="checkbox"/> 호흡기 증상 <input type="checkbox"/> 의식저하 <input type="checkbox"/> 두통 <input type="checkbox"/> 심한 두근 <input type="checkbox"/> 경련 <input type="checkbox"/> 구토 <input type="checkbox"/> 안구동 <input type="checkbox"/> 광과민증 <input type="checkbox"/> 경부강직 <input type="checkbox"/> 근육동 <input type="checkbox"/> 사지위약(Paralysis/Weakness of extremities) <input type="checkbox"/> 흉만성 발진 <input type="checkbox"/> 복통 <input type="checkbox"/> 흉통 <input type="checkbox"/> 수포성 발진 <input type="checkbox"/> 설사 <input type="checkbox"/> 호흡곤란 <input type="checkbox"/> 인후통 <input type="checkbox"/> 부정맥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뇌막염 환자 척수액 소견	백혈구(WBC) [ ]개/ $\mu$ l 다핵구/림프구/기타(Poly/Lympho/Other) [ %/ %/ %] 단백질(Protein) [ ]mg/dl 당(Glucose) [ ]mg/dl			
추 정 감염경로	<input type="checkbox"/> 진단감염환자와 접촉 <input type="checkbox"/> 개별감염환자와 접촉 <input type="checkbox"/> 불확실함 <input type="checkbox"/> 접촉없었음	추 정 감염지역	<input type="checkbox"/> 국내 <input type="checkbox"/> 국외 (국명) _____ (체류기간) _____	
검체채취유무	<input type="checkbox"/> 유 ( <input type="checkbox"/> 양성 <input type="checkbox"/> 음성 <input type="checkbox"/> 진행중) <input type="checkbox"/> 무	검체채취일	년 월 일	
가검물명	<input type="checkbox"/> CSF <input type="checkbox"/> 대변(stool) <input type="checkbox"/> 인후(Throat swab) <input type="checkbox"/> 결막(Conjunctival swab)	사망여부	<input type="checkbox"/> 생존 <input type="checkbox"/> 사망	

신고일: 년 월 일  
 표본감시기관장: \_\_\_\_\_  
 요양기관지정번호: \_\_\_\_\_  
 주 소: \_\_\_\_\_ 전화번호: ( - - )

※작성요령:  
 ①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 수족구병으로 시작된 신경학적 합병증(뇌막염, 뇌염, 폴리오양 마비 등) 소견을 보인자  
 ② 표본감시기간은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③ 컴퓨터 통신 이용 시에는 서명 (인)을 생략합니다.  
 \* 생존으로 신고한 환자가 추후 사망한 경우 사망으로 수정보고 함

# 감사합니다.

